

제 823 호
1981. 2. 7

발행인: 서울특별시 박 영 수
 편집: 문화공보관 박 종 우
 전화: 75-7834
 인쇄: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제	내	쪽
	1488	호: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	3
	1489	호: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	3
○ 규	제	내	쪽
	1889	호: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	7
○ 고	시	제	내
	24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변경(기간연기)	14
	25	호: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결정및지적승인	14
	26	호: 서울특별시지방문화재단지정고시	15
	27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기간연기승인	15
	28	호: 청계천 7가구역제 3.5지구개발사업시행인가변경 (기간연장) 고시	16

<이면 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공 고

제 31 호 : 도시 계획 사업 (양화교-갈산간도로정비공사) 시행인가실지
계획 공람공고 16

제 33 호 : 화양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청산금 납입고지서공시송달... 20

제 35 호 : 도시 계획 사업 (도로) 실시 계획 공람공고 30

제 35 호 (동대문구공고) : 지적공부복구 33

제 49 호 (영등포구공고) : 공인분실및산조공고 34

◎ 단 령

◎ 문 서 통 기 서

◎ 기 정

조 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 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1. 2. 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이장감인

◎서울특별시조례제 1488 호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3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명 칭	위 치
종 로 도 서 관	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동산 1 번지 9 호
남 산 도 서 관	용산구후암동 30 번지 84 호
동 대 문 도 서 관	동대문구신설동 109 번지 4 호
영 등 포 도 서 관	영등포구영등포동 8 가 121 번지 25 호
정 독 도 서 관	송로구화동 1 번지
어 린 이 도 서 관	종로구사직동 1 번지 27 호
마 포 도 서 관	마포구아현동 602 번지 1 호
용 산 도 서 관	용산구후암동 30 번지 90 호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낙영수인

1981.2.7

◎서울특별시조례제 1489 호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지하철도사업에
관한 기구설치조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설치) 서울특별시장은 지하철도건설촉진법제 1 조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의 지하철도 (이하 "지하철"이라 한다) 건설을 위한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이하 "건설본부"라 한다) 를 두고 서울특별시의 지하철 운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영사업소 (이하 "운영사업소"라 한다) 를 둔다.

제 2 조 (위치) 건설본부 및 운영사업소의 위치는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제 3 조 (공무원의 정원) 건설본부 및 운영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 2 장 건설본부

제 4 조 (본부장) ①건설본부에 본부장 1 인을 두고 본부장은 지방이사관, 지방공업기감, 지방시설기감 또는 지방부이사관, 지방공업부기감, 지방시설부기감으로 보한다.

②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건설본부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

을 지휘 감독한다.

제 5 조 (차장) ①건설본부장 밑에 차장 1 인을 두고 차장은 지방부이사관 지방공업부기감 또는 지방시설부기감으로 보한다.

②차장은 지하철 신설 업무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제 6 조 (하부조직) ①차장밑에 서무과, 기획조사과, 건설 1 과, 건설 2 과 공무과 및 전기과를 둔다.

②서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획조사과, 건설 1 과 및 건설 2 과장은 지방토목기정으로, 공무과장은 지방토목기정 또는 지방건축기정으로,

전기과장은 지방공업기정으로 보한다

③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 및 자금관리
4. 자재 및 재산관리
5. 기타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기획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하철건설 기본계획 및 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
2. 지하철건설 설계 및 심사
3. 민자건설업체의 지도감독

4. 지하철건설 기술 업무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⑤건설1과, 건설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건설1과, 건설2과의 분장 사무의 구분은 지역별로 본부장이 지정한다.

- 1. 지하철건설공사시공 및 감독
- 2. 수탁공사에 관한 사항
- 3. 소관 자재의 현장관리

⑥공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지하철궤도(노선)의 시공및감독
- 2. 지하철 건축물의 시공 및 감독

⑦전기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수전, 신호및 통신설비의 시공 및 감독
- 2. 송, 배전 시설에 관한 사항

제 3 장 운영사업소

제 7 조 (소 장) ①운영사업소에 소장 1인을 두고, 소장은 지방부이사관, 지방공업부기감, 지방시설부기감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지하철 운영사업소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8 조 (하부조직) 운영사업소장 밑에 업무과, 운수과, 시설관리과 및 안전관리과를 둔다.

②업무과장 및 운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지방토목기장 또는 지방건축기장으로, 안전관리과장은 지방공업기장으로 보한다.

③업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서무,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운영세획에 관한 사항
- 3. 회계 및 재물관리
- 4. 자재창고의 지도감독
- 5. 기타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운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역구의 지도감독 및 운영
- 2. 승차권 및 요금관리
- 3. 전동차의 운행관리

⑤시설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궤도관리보수 및 공무소의 지도감독
- 2. 건축 및 토목구조물 관리 보수
- 3. 차량공작소의 설계 및 시공감독
- 4. 기타 부대시설들 유지관리

⑥안전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전기설비의 보수 및 유지관리
- 2. 신호 통신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
- 3. 전동차의 수급 수선검사 및 안전관리
- 4. 소관현업기관의 지도감독

제 9 조 (현업기관) 운영사업소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하철 운영사업소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역과 사무소 기타 필요한 현업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 10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에서 수행하던 업무중 지하철 건설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건설본부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며, 지하철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운영 사업소에서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 산하 현업기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현업기관으로 본다.

④ (증원의 예외조치) 본 조례에서 정한 2급올류 공무원 1명 (차장)과 3급갑류 공무원 2명 (과장)은 서울특별시 지방 공무원 정원을 조정, 시행할 때까지 서울특별시 지방 공무원 전체 정원 범위내에서 운영한다.

<별표 1> 지하철건설본부 지방공무원 정원표

직 급 별	정 원	정 원 내 용
2 급	1	행정, 공업 및 시설직 1
3 급갑류	6	행정직 1, 토목직 3, 토목및건축직 1, 공업직 1
3 급올류	23	행정직 5, 토목직 11, 건축직 2, 전기직 3, 기계또는전기직 1, 통신직 1
4 급갑류	74	행정직 13, 토목직 45, 건축직 5, 기계직 1, 전기직 8, 통신직 2
4 급올류	74	행정직 12, 토목직 44, 건축직 6, 기계직 3, 전기직 8, 통신직 1
5 급갑류	46	행정직 3, 토목직 41, 기계직 2
5 급올류	4	토목직 4
고 용 원	32	수위장 1, 수위 2, 운전원 7, 전공 1, 사진사 1, 제도사 1, 타 자원 5, 대장정리원 6, 청부 2, 전달부 1, 경비원 4
합 계	260	

<별표 2>		지하철 운영 사업소 지방공무원 정원표	
직급별	정원	정 원 내 용	
2급을류	1	행정동업 및 시설직 1	
3급갑류	2	행정직 1, 공업직 1	
3급을류	12	행정직 5, 토목직 1, 건축직 1, 전기직 1, 기계직 3, 통신직 1	
4급갑류	38	행정직 13, 토목직 3, 건축직 1, 기계직 7, 전기직 9, 통신직 5	
4급을류	30	행정직 9, 토목직 3, 건축직 3, 기계직 5, 전기직 5, 통신직 5	
5급갑류	9	행정직 5, 토목직 2, 전기직 1, 통신직 1	
기능직	1,367	5등급: 철도현업 20, 6등급: 철도현업 108 7등급: " 213, 3등급: " 362 9등급: " 362, 10등급: " 290	
고용원	234	운전원 6, 전관 12, 사진사 1, 수위장 1, 수위 2, 계도사 1, 목공 1, 타자원 4, 경비원 15, 대장정리원 8, 상주 2, 전담부 1, 안내원 34, 선로수 17, 견리수 53, 여객수 70, 보안수 2, 통신수 4	
합 계	1,693		

규 칙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사무분장규칙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1981년 2월 7일

◎ 서울특별시규칙 제 1889 호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사무분장규칙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사무분장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지하철도사업에 관한 사무분장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본부(이하 "건설본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지하철 운영사업소(이하 "운영사업소"라 한다)의 과·계의 분장사무와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건설본부

제 2 조 (서무과) ① 서무과에 서무계 기획계, 경리계 및 관제책물 두고

제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사무과와 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무과

가. 보안업무, 청사관리 및 당숙지

나.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후생에 관한 사항

다. 문서, 편인, 관수와 의견행사 및 공보

라. 업무용 차량관리

마. 자재 감사

바. 본부내 타과, 과내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기획과

가. 지하철건설 기획 업무의 종합 조정

나. 기본 운영 계획의 수립 조정 및 심사분석

다. 세입, 세출 예산의 편성 및 총괄 조정

라. 지하철건설의 홍보

마. 지하철건설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경리과

가. 지하철 건설 예산의 지출 총괄 및 결산

나. 광고에 관한 업무
다. 예산과목, 회계심사 및 지출원인 행위

라. 공사의 도급, 물품 자재 및 기타 상역의 계약 업무

나. 물품 견수 및 공사 검사에 따른 입회

바. 세입, 세출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4. 관재과

가. 지하철건설 자재의 수급 계획 및 출납보관

나. 자산의 취득 및 관리처분

다. 건설용 자재물품의 규격 제정에 관한 사항

라. 자산의 수송 및 보상

마. 회전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 3 조 (기획조사과) ① 기획조사과에 기획조정과, 계획설계과 및 지도과를 두고 기획조정과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계획설계과장 및 지도과장은 지방토목기사로 보한다.

② 기획조사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획조정과

가. 민자로 건설하는 지하철건설의 행정 업무

나. 서울 지하철주식회사의 행정

지원 및 운영의 지도감독
다. 민자로 건설하는 지하철 건설의 차관에 관한 업무
라.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계획설계계

가. 지하철 건설의 기본 계획 및 보상업무 (민자건설포함)

나. 지하철 건설에 따른 제기준, 규정의 제정 및 조정

다. 지하철 건설 공사의 도목 구조물의 기본 설계 및 심사

라. 지하철 건설의 물동 계획과 공사 진도 파악 및 종합조정

마. 지하철 건설에 관련된 수탁 공사의 종합 조정과 협의에

관한 업무

3. 지도계

가. 민자로 건설하는 지하철 공사의 기술 지도 감독

나. 민자로 건설하는 지하철 공사의 설계 및 준공의 확인

다. 민자로 건설하는 지하철 공사의 진도 파악, 조정 및 기록 정비

제 4 조 (건설 1, 2과) ①건설 1과와 건설 2과에 각각 공사 1계, 공사 2계, 공사 3계 및 공사 4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토목기과로 보한다.

②건설 1과, 건설 2과의 계별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고 각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각과 공사 1계에서 관장하며, 각계별 분장 사무는 공사 구역별로 본부장이 정한다.

1. 공사 1계, 공사 2계, 공사 3계, 공사 4계

가. 소관분담 지역의 지하철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

나. 소관 수탁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

다. 소관공사에 따른 물품 계획 및 자재 수급 관리

라. 소관공사와 관련된 배상, 보상 및 기타 민원처리

마. 자재의 현장 관리

제 5 조 (공무과) ①공무과에 선로계 건축 1계 및 건축 2계를 두고, 선로계장은 지방토목기과로, 건축 1계장 및 건축 2계장은 지방건축기과로 보한다.

②공무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 1계와 건축 2계의 분장 사무는 공사구역별로 본부장이 정한다.

1. 선로계

가. 지하철 계도 건설의 설계, 시공 및 감독

<p>나. 제도 재료의 규격에 관한 사항</p> <p>다. 소관용품의 수급에 관한 사항</p> <p>라. 소관 사항에 따른 예산의 종합조정, 조사 및 배상</p> <p>마. 과내 다른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건축1계, 건축2계</p> <p>가. 지하철 정기장내부 및 부대 건축물 설계 시공 및 감독</p> <p>나. 지하철 구내의 위생, 급수 및 소방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독</p> <p>다. 지하철 건설본부의 기타 영선 업무</p> <p>라. 소관 현장 관리 업무</p> <p>제 6 조 (전기 과) ①전기과에 전무제, 전력제, 신호제, 통신제 및 시설제 틀 두고 전무제장, 전력제장, 및 신호제장은 지방전기과로, 통신제장은 지방통신과로, 시설제장은 지방기계과 또는 지방 전기과로 보한다.</p> <p>②전기과의 계별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전무제</p>	<p>가. 지하철 건설에 따른 전기 관리 업무의 종합조정</p> <p>나. 변전 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독</p> <p>다. 소관용품의 규격 및 수급 조정</p> <p>라. 전기관리 해의 방역</p> <p>마. 과내 타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전력제</p> <p>가. 지하철 건설에 따른 송·배전 시설,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독</p> <p>나. 전선로의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독 검사</p> <p>다. 소관용품의 규격, 수급조정에 관한 사항</p> <p>3. 신호제</p> <p>가. 지하철 신호 설비의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독</p> <p>나. 소관용품의 규격, 수급조정에 관한 사항</p> <p>다. 소관 시설물의 검사</p> <p>4. 통신제</p> <p>가. 지하철 통신설비의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독</p> <p>나. 소관용품의 규격, 수급 조정에 관한 사항</p> <p>다. 소관시설물의 검사</p>
--	---

5. 시설제

- 가. 조명, 환기, 냉난방, 기타부대 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독
- 나. 소관용품의 규격, 수급조정 및 현장관리

제 7 조 (직무대행) ①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본부장과 차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강 운영 사업소

제 8 조 (업무과) ①업무과에 서무계, 기획예산계 및 재무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업무과의 지별 분장사무는 다음 자호와 같다.

1. 서무계

- 가. 보안업무 및 청사관리
- 나.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 급여, 교육훈련 및 후생에 관한 사항
- 다. 문서, 판인 관수와 의견 행사 및 공보
- 라. 업무용 차량관리
- 마. 자체감사, 복무, 당직업무
- 바. 기타사업소내타과, 과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계획예산계

- 가. 기획업무의 종합조정
- 나.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조정 및 심사분석

다. 세입, 세출 예산안의 작성 및 총괄조정

라. 예산배정 및 재정합의에 관한 사항

마. 경영관리 평가 및 경영 통계 발간

바. 기타 지하철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무계

가. 사업예산 지출의 증발 및 결산

나. 사업의 원가 계산 및 경영 분석

다. 세입, 세출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

리. 사업용 자재의 수급계획 및 출납보관

마. 고정자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

바. 자산의 수용 및 보상

사. 자재창고업무 운영 및 지도 감독

아. 기타 회계 및 관재에 관한 사항

제 9 조 (운수과) ①운수과에 운수계, 심사계 및 운전계를 두고, 운수계장 및 심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운전계장은 지방기계기좌로 보한다.

2) 운수과의 계별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수계

가. 여객수송계획 및 소관 예산의 종합조정

나. 영업수지 예산과 경영분석
다. 운수업무의 종합조정

라. 역무의 지도 감독과 운영 및 역사관리

마. 광고 및 영업선전

바. 여객영업사고방지 및 처리
사. 지하철관리 규정 및 지하철 홍보

2. 심사계

가. 승차권 및 요금관리

나. 여객운수 영업에 관한 심사 및 통계

다. 타운수 기관과의 연락 운수 및 정산

라. 운수 세입금의 징수 및 총괄

3. 운전계

가. 전동차 운행 및 안전관리

나. 타운전 기관과의 연락협조
다. 운전 사명실 승무관리소의 운영 및 지도감독

라. 기타 전동차 운전에 관한 사항

제 10 조 (시설관리과) ① 시설관리과

에 보선계, 영선계 및 설비계를 두고 보선계장은 지방토목기관으로,

영선계장은 지방건축기관으로, 설비계장은 지방기계기관으로 보한다.

(2) 시설관리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선계

가. 지하철구도의 유지관리 및 보수

나. 궤도 사고방지 및 처리
다. 공무소 업무의 지도 감독

라. 지하철 토목 구조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마. 기타 지하철 운영 사업소내 토목업무에 관한 사항

바. 과내 타재에 속하지 않은 사항

2. 영선계

가. 지하철 정거장 내부 및 부대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나. 기타 지하철 운영 사업소의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

3. 설비계

가. 위생, 급수,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나. 기타부대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사항

제 11 조 (안전관리과) ① 안전관리과에

전차계, 전기계 및 신호통신계를 두고 전차계장은 지방기계기관 - 또는 지방전기기관으로, 전기계장은 지방전기기관으로, 신호통신계장은 지방통신기관으로 보한다.

②안전관리과의 계별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차계

가. 전동차 수급 계획 및 유지관리

나. 전동차 및 검수차용품의 규격 및 국산화 추진

다. 전동차의 검사, 수선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라. 차량 공작소의 운영 및 지도 감독

마. 기타 전동차 안전에 관한 사항

바. 파내 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전기계

가. 지하철 전기관계 업무의 총합 조정

나. 전기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다. 전력 사명실, 전기소 업무의 운영 및 지도 감독

라. 송배전시설, 조명, 환기, 냉난방 및 기타 부대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마. 파내 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신호통신계

가. 신호통신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나. 소관 시설물의 안전관리

다. 통신소, 신호 보안소의 운영 및 지도감독

마. 기타 신호 및 통신 업무의 종합 조정

제12조 (적무대행) 운영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업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운영 사업소장과 업무과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수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전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 산하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후 별도 임명될때까지 계속 근무한다. 다만,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가능직 공무원과 고용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24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변경 (기간연기)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91 호 (79. 2. 28) 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 12. 10) 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1년 2월 3일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 : 강남구 도곡동 109 번지 일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대도) 국민 학교
- 다.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 라.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공년월일 : 1979. 3

당초준공예정일 : 1980. 12. 30

변경준공예정일 : 1981. 6. 30

-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생략)
- 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생략)
- 사. 사업의 규모 (면적) : 14, 635 (4, 427 평)

◎ 서울특별시고시제 25 호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결정 및 지적승인

-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 12. 10) 관한 위임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1. 2. 3

서울특별시장

○ 시설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지 면	비 고	
신설	여객자동차정류장	성동구구의동 구의매립지	30,300	시의버스	
*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도면생략)					
<p>◎ 서울특별시고시제 26 호</p> <p>서울특별시지방문화재지정 고시</p> <p>문화재 보호법 제 54 조의 2 및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조례 제6</p>		<p>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를 지정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 17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p> <p>1981.2.5 서울특별시 장</p>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지정목록					
별	지정번호	경 칭	면 적	소 재 지	소 유 자
지방유형 문화재	제48 호	광명대군묘역 일원	125,237 ¹⁸ 평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산 10-1,6,8,9	전주이씨 장의 북파 종중
<p>◎ 서울특별시고시제 27 호</p> <p>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기간연기승인</p> <p>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0 호 (75. 11.24) 및 동 고시 제 366 호 (79.8.16) 로 실시 계획인가 및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사업 (학교 : 서울대학교) 에 대한 사업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기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p>		<p>1981.2.6 서울특별시 장</p> <p>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외211 필지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 서울대학교) 다. 시행면적및규모 : 3,542,907 ㎡ (1,073,608 평) 라. 사업시행자 : 서울대학교 총장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1) 착수 : 75.11.29 2) 준공예정일 : 85.12.31</p>			

◎ 서울특별시고시제 28호

청계천 7가구역 제 3,5 지구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변경 (기간연장)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86 호 (78.3.9) 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된 청계천 7가구역 제 3,5 지구에 대하여 재

개발사업시행인가변경 (기간연장) 을 도시재개발법 제 12 조 제 2 항 및 제 8 조 (권한위임) 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였기 동법 제 16 소 제 1 항 에 의거 더 과 같이 고시한다.

1981.2.6

서울특별시 장

청계천 7가재개발사업시행계획변경 (기간연장)

구 분		제 3,5 지구
재개발사업명칭		청계천 7가구역 제 3,5 지구 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및 면적		중구 신당동 217-39 일대 1,240.2 평
주된 사무소 소재지		중구 신당동 217-39
시행기간	변경전	1978.3.9-1980.12.31
	변경후	1978.3.9-1981.4.30
시행인가 년월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 86 호 (78.3.9) 사업시행인가
시행자의 주소및성명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17-67 청계천 7가구역 제 3,5 지구 재개발조합 조합장 김 한 주
비 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49 호 (79.2.17) 동고시 제 41 호 (80.2.11) 및 동고시 제 282 호 (80.8.6) 로 사업시행인가 계획변경 (기간연장)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31조

도시계획사업 (양화교-갈산간 도로정비공사) 시행인사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 198 호 (71.4.7)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25 호 (71.11.10)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된 (양화교-갈산간 도로정비공사)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인사계획 (시행인가) 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규정에 의거 공고일

<p>토 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각각 비치하 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1.2.4 서울특별시 강</p> <p>(공람개교)</p> <p>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북동119번지 4의 66필지</p>	<p>2. 사업의 종류 명칭: 도시계획사 업 (양화교 - 칼산간 도로정비 공사)</p> <p>3. 사업의 규모: = 7 M = 5,421 M = 362.7 a</p> <p>4. 사업시행자: 강서구청</p> <p>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81.2.20 나. 준공예정일: 81.9.20</p> <p>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참조</p> <p>7.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소 선 명: 조서참조</p>
--	--

토 지 조 서

동 명	지 번	자 목	면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북 동	119-4	전	1,706	강남구 논현동230-6	김 상 식
"	122-1	답	998	효자동172-1	강 인 석
"	121-1	"	516	공덕동175-124	최 규 일
"	121-2	"	562	이태원동271	김 익 순
"	119-2	전	1,299	동선동5가172	이창희외2명
"	135-1	"	76	동작동307의3	김 회 제
"	135-5	"	40	반포아파트84동104호	"

종 명	지 번	지류	면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목 동	136-10	전	1,022	반포아파트 86 동 104 호	김 희 제
"	136-2	"	152	"	"
"	137-7	"	122	"	"
"	136-3	"	175	"	"
"	137-8	"	625	"	"
"	137-5	"	155	"	"
"	138-18	"	169	"	"
"	143-23	"	56	목동 223	문 덕 천
"	137-6	"	23	동작동 307-3	김 희 제
"	138-17	"	17	반포아파트 86 동 104	"
"	413	도로	80		국
"	136-7	임야	231		비도번
"	137-19	구거	747	목동 264-3	양동농지재단조합
"	137-23	하천	423		서울시
"	143-2	구거	198		조선총독부
"	143-26	하천	126		"
"	143-27	"	76		국
"	143-24	제방	1,544		"
"	143-10	"	334		"
"	144-7	"	195		"
"	144-2	"	255		"
"	412	도로	734		"
"	145-2	제방	727		"
"	414	하천	10,529		"
"	151-2	제방	3,217		"

동 명	지 번	지 목	년 적	소 유 작	
				주 소	성 경
목 동	152-2	제 방	820		국
"	153-2	"	876		"
"	154-2	"	1,246		"
"	155-2	"	2,585		"
"	156-2	"	1,765		"
"	160	"	3,094		"
"	162-2	"	1,617		"
"	172-2	"	4,215		"
"	409-3	"	57,455		"
"	-1	구 거	18,268		"
"	409-188	잡종지	11,580		"
"	68	제 방	31,537		"
"	40	"	172		"
"	189	담	46		비 도 번
"	67	잡종지			"
"	25	구 거	774		국
"	432	도 로	5,484		"
신정동	137-2	제 방	4,288		"
"	-3	"	20,559	목동 264-3	양동농지개발조합
"	-4	"	519		국
"	138-2	"	3,461		"
"	842	도 로	32,430		"
"	140-2	제 방	5,878	목동 264-3	양동농지개발조합
"	141-3	"	6,435		"
"	147-3	"	8,030		국

36-20

제 823 호 시

보 1981.2.7

종 명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신정동	148-2	채 방	9,642	목동 264-3	양동농지개발조합
"	149-4	"	1,412	"	국
"	841	"			"
"	149-7	"	6,737		"
"	154-2	"	3,560	목동 264-3	양동농지개발조합
"	153-2	"	3,220	"	"
"	152-4	"	5,550	"	"
"	152-6	구 기	1,706	"	"
"	153-4	"	982	"	"
"	136-17	전	3		"

건 물 조 서

종 명	지 번	면 적	구 소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복 동	409-68	8.5 평	세멘트벽돌가	목동 409-68	이 성 녀
"	409-68	11 평	"	"	이 성 재

㉑ 서울특별시 공고 제 33 호

화양수가리지구의정리사업지구
청산금납입고지서공시송달

80.12.29자로 납입고지한 화양
수가리지확정지구내 청산금납입고지
서류 납부외부자에게 송달한 바

수령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등으로
송달이 불능함으로 지방세법 제 52조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한다.

1981.2.

서울특별시장

청 산 금 채 납 자 조 서											
(화양 추가 지구)											
19 현재											
수납 번호	종 전 토 지			권리 면적	환 지 토 지			증 평	청산금 채납액	납 부 자	
	동명	지번	평수		동명	지번	평수			주 소	성 명
21	자양동	307-9		20	자양동	584-2	22.6	2.6	442,000	연남동 364-25	송완규
39	"	304-21		61.6	"	585-18	62.7	1.1	374,000	자양동 304-4	장용남
45	"	448-35		12.5	"	586-8	25.4	12.9	3,354,000	화양동 10	김동규
62	"	437-6		350.2	"	588-12	350.6	0.4	94,285	자양동 437-6	염광민
70	"	443-2		45.5	"	589	48.5	3.0	1,080,000	자양동 399-5	최광용
73	"	436-6		62	"	589-17	62.5	0.5	90,000	자양동 437-18	서병길
110	"	371-16		37.5	"	595-22	37.9	0.4	120,000	잠실동 61-45	김생구
129	"	산39-27		40	"	598-4	45.3	5.3	1,749,000	자양동 598-4	김광식
132	"	산39-21		35.6	"	598-18	35.9	0.3	90,000	용달동 10-25	남궁성득
146	"	360-5		14.8	"	599-18	15.1	0.3	57,000	자양동 472-12	홍천수
154	"	391-1		73.2	"	599-33	73.7	0.5	95,000	자양동 399-2	신현광
165	"	389-1		72.4	"	500-19	73.2	0.8	152,000	" -	신현광
166	"	389		37.8	"	600-20	37.9	0.1	30,000	"	신현광
174	"	307		35	"	601-11	36.6	1.6	448,000	금호동 2가산 14	김춘배
175	"	307-2		20.7	"	601-17	21.1	0.4	76,000	연남동 364-25	송완규
189	"	122-22		47.1	"	604-4	47.8	0.7	238,000	자양동 122-228	김중일
212	"	104-17		48.5	"	605-21	49.3	0.8	240,000	자양동 104-17	이영호
215	"	104-26		82.6	"	605-32	84.1	1.5	315,000	화곡동 353-18	김주영
216	"	104-13		86	"	605-35	89.6	3.6	756,000	"	김주영

제 823 호 시 보 1981.2.7 36-21

수납 번호	종 전 토 지			권리 면적	환 지 보 지			증 평	청 산 금 채 납 액	남 부 자	
	동명	지번	평수		동명	지번	평수			주 소	실 명
220	자양동	103-22		85.2	자양동	606-13	87.9	2.7	513,000	삼호동2가8.7	조규현
221	"	392-2		45	"	606-14	45.4	0.4	216,000	자양동141	김원세
225	"	103-23		44	"	"-27	44.6	0.6	240,000	사직동91	이수진
254	"	343-2		39	"	609-13	40	1.0	290,000	천호동21-71	전기철
255	"	15-35		17.7	"	"-18	17.8	0.1	19,000	화곡동353-43	정준모
256	"	343-5		44.8	"	"-20	45.5	0.7	294,000	당산동3가1-606	삼익오형업
264	"	324-76		115.6	"	610-6	199	83.4	27,522,000	회현동2가75	김우희
300	"	"-96		0.6	"	"-52	0.7	0.1	20,000	미아동223-6	김태식
393	"	271-20		40	"	613-15	40.8	0.8	252,000	자양동142-118	김원경
397	"	328-1외2		274	"	"-31	366.2	92.2	21,206,000	자양동328-1	이근산
413	"	326-4외1		45.8	"	614-13	46.8	1.0	350,000	동송동129-224	최성희
488	"	343-13		60.3	"	617-36	61.4	1.1	660,000	성수동2가316-58	이성업
495	"	170-6		36.3	"	"-45	37.1	0.8	160,000	구외동67-2	유복영
510	"	"-15		118.9	"	618-43	119.9	1.0	200,000	"	외3인
564	"	172-38		145.8	"	622-7	146.5	0.7	210,000	상왕십리494-2	허용
621	"	193-25		43	"	624-38	44.2	1.2	684,000	황학동217	정기원
623	"	192-12	(12) 624-18 가2	0.6	"	"-47	0.7	0.1	20,000	자양동173-15	배숙기
624	"	"-13	"	0.6	"	"-48	0.7	0.1	20,000	"	"
641	"	173-17	2K(사도)	70	"	625-31	72.6	2.6	520,000	동송동4-8	이원구
642	"	174-8	"	72.2	"	"-32	72.6	0.4	80,000	구외동236-22	정동운
645	"	185-4	12	106.3	"	627-3	106.6	0.3	180,000	수유동391-279	심현1 의

36-22

제823호

스

보

1981.2.7

수납 번호	종 전 토 지			권리 면적	환 지 토 지			증 평	청 산 금 채 납 액	납 부 자	
	동 명	지 번	평 수		동 명	지 번	평 수			주 소	성 명
648	자양동	185-8	12	32.3	자양동	627-6	32.5	0.2	40,000	수유동 391-27	심혁두외1인
649	"	"-5	"	106.3	"	"-7	106.7	0.4	252,000	"	"
697	"	179-3	22	32.5	"	630-13	33.3	0.8	260,000	자양동 192-1	김먹기
706	"	151-1	21	61	"	631-3	63.9	2.9	1,160,000	행당동 327-23	손수열
714	"	산14-5	(30)사도	35.3	"	"-21	35.9	0.6	120,000	인의동 46-6	전호경
718	"	산14-6	30	40.6	"	"-25	41.3	0.7	227,500	도선동 311	손중용외1
727	"	161-13	"	70	"	632-7	72.7	2.7	540,000	구의동 224-18	이병국
761	"	367-4	(30)사도	35.3	"	634-22	35.4	0.1	20,000	경운동 17-2	각 찬규외 1
770	"	167-4	"	42	"	"-39	43.5	1.5	300,000	중림동 220	조기식외 3
787	"	107-25	40	40	"	636-16	40.7	0.7	217,000	용두동 223-24	박익하
788	"	107-1	(40)사도	61	"	"-18	62.1	1.1	220,000	행촌동 20-7	진현권
791	"	110-2	(637위)50	50	"	637-2	51.3	1.3	455,000	장안동 65-5	송인광
795	"	110-4	50	45	"	"-8	47.5	2.5	950,000	자양동 124	이광재
805	"	305-5	50	37	"	"-22	39.7	2.7	837,000	회당동 239-1	홍채승
815	"	122-25	(50)사도	68	"	638-2	68.2	0.2	40,000	행당동 317	신상철
817	"	122-36	"	68	"	"-5	68.3	0.3	60,000	"	"
818	"	"-37	50	49.2	"	"-1	49.7	0.5	155,000	장원동 211, 남산, 옥산 221, 유수환	"
819	"	"-17	(51)사도	68	"	"-8	68.3	0.3	60,000	"	"
829	"	"-11	51	35	"	"-25	35.9	0.3	270,000	상진동 10-22	신승권
839	"	368-2	(50)사도	16	"	639-6	16.4	0.4	76,000	자양 100-1	김수원외 1
845	"	"-3	"	66.5	"	639-14	67	0.5	75,000	자양 100-1	김수원외 1

제 623 호

지

보

1981.2.7

36-23

수납 번호	중진토지			권리 면적	환지토지			증 평	정산금 채납액	납부자 주소, 성명
	동명	지번	평수		동명	지번	평수			
849	자양	370-9	(사도)50	66.5	자양	639-23	66.8	0.3	57,000	자양 100-1 김용원의 4
861	"	398-4	60	49.5	"	640-4	53.1	3.6	1,224,000	동작동 3-9 백헌기
864	"	398-10	(사도)60	66.6	"	640-10	65.8	0.2	38,000	연희동 446-165 민병욱
870	"	395-9	"	66.6	"	640-21	67.2	0.6	114,000	"
874	"	103-8	"	66.6	"	640-29	67.5	0.9	171,000	"
892	"	98-2	61	194	"	643-22	196.4	2.4	360,000	화양 24-12 김현경의 4
894	"	의1 97-1	(사도)67	160.3	"	643-28	161.3	1	150,000	"
900	"	산58-7	"	84	"	645-6	84.1	0.1	24,000	남가좌 79-27 유재석
921	"	97-5	"	20	"	646-41	21	1	190,000	자양 69 박순녀
925	"	산54-5	"	54.2	"	647-2	55.6	1.4	490,000	자양산 54-5 이건정의 1
934	"	산54-21	"	45.2	"	647-20	45.5	0.3	87,000	반포동 1-307 가주APT 박종명
946	"	101-17	"	19.5	"	648-7	20.2	0.7	119,000	자양 101-5 박영수의 6
959	"	103-39	"	0.6	"	648-33	0.7	0.1	17,000	역삼동산 77-10김동욱의 1-
962	"	101-20	"	21.2	"	649-2	21.3	0.1	18,000	자양 101-5 박영수의 6
964	"	산52-3	"	68.6	"	649-6	68.8	0.2	36,000	자양산 52 박원환의 4
965	"	산52-8	"	35.7	"	649-8	38.6	2.9	1,044,000	자양산 52-8 임병란
1039	"	106-3	"	0.6	"	651-52	0.7	0.1	18,000	자양 187-17 김성범의 2
1042	"	119-53	"	0.3	"	652-17	0.4	0.1	20,000	자양 482-2 권경진
1046	"	119-60	"	1.1	"	652-26	1.4	0.3	150,000	윤재복
1097	"	산15-3	"	56.8	"	654-5	57.8	1	270,000	마장동 569-1 최이공
1113	"	153-7	"	102.30	"	655-25	109.3	7	1,400,000	이남현

36-24

제 823호

시

보

1981.2.7

수납 번호	종 전 토 지			권 리 면적	관 지 토 지			증 명	청 산 금 채 납액	남 부 자	
	등 명	지 번	평 수		등 명	지 번	평 수			주 소 , 성 명	
1141	자양	153-24		25	자양	656-26	25.2	0.2	40,000	이남현	
1221	"	산49-31		96.6	"	663-2	104.2	7.7	3,060,000	울지로 6 가 17 김창호	
1225	"	79-5		75.5	"	663-7	78.1	2.6	494,000	자양 227-135 김춘동	
1227	"	117-9		36	"	663-14	37.3	1.3	390,000	자양 117-9 유태열	
1229	"	117-2	외	17.2	"	663-16	17.5	0.3	57,000	구의 235-38 강철수의 2	
1245	"	83외2		82.4	"	555-7	82.6	0.2	56,000	자양 63-5 임삼철	
1246	"	83-2		21.6	"	"-8	21.9	0.3	57,000	자양 83 박순희	
1247	"	83-3		50	"	"-9	50.2	0.2	60,000	회현 1 가산 1-2 양준오	
1255	"	산30		53.3	"	666-5	55.2	1.9	589,000	자양산 30 이우현	
1267	"	산28-2		44	"	"-19	44.9	0.9	288,000	화양 111-28 유오준	
1285	"	산38		12.7	"	671-3	27.1	10.4	2,184,000	자양산 38 손봉현	
1288	"	산26-6		132.5	"	672	139.6	3.3	759,000	잠실동 506-302 잠실 APT 윤봉현	
1294	"	산22		16.7	"	674-6	28.1	11.4	2,052,000	방배 12-22 이용환	
1298	"	127-1		104.80	"	679-1	115.40	10.6	5,724,000	신림동 1-450 이병철	
1307	"	141-16		8.3	"	679-15	9.1	0.8	400,000	구의동 222-41 김재철	
1361	"	산9-4		30.2	"	681-5	35.2	5	2,250,000	자양산 9-4 박승관	
1363	"	139-2		24.5	"	681-9	47.9	13.4	4,020,000	하왕십리 242-157 이의호	
1364	"	"-15		3.8	"	681-10	4.4	0.6	120,000	동농동 238-16 김대응	
1371	"	산6-9		11.3	"	681-22	11.5	0.2	40,000	자양산 6-7 유환호	
1375	"	29-15		35.3	"	681-33	52.3	1.9	5,000,000	남대문 4 가 12-6 서정우	
1384	"	25		152.5	"	682-4	157.60	5.1	1,765,000	부암동 205-9 정진영	

제 823 호

시

보

1981.2.7

36-1.5

수납 번호	종 전 토 지			권리 면적	환 지 토 지			증 명	청 산 금 채 남 액	남 부 자	
	동 명	지 번	평 수		동 명	지 번	평 수			주 소 , 성 명	
1393	자 양	24- 5		25.8	자 양	682-16	2.7	16.9	4,732,000	자양 10 홍춘포	
1402	"	23- 7		0.6	"	682-38	0.7	0.1	20,000	금호동 4 가 211 신현승	
1403	"	산10-49		65.4	"	683- 1	65.6	0.2	40,000	이 등 기	
1404	"	산10-40		65.4	"	" - 4	65.7	0.3	60,000	"	
1407	"	" -31		65.4	"	" - 7	66	0.6	120,000	"	
1465	"	23- 1		17.8	"	685-29	20.5	2.7	702,000	서린동 94 진주이씨의 1	
1484	"	산10-149		40.9	"	686-20	42.7	1.8	360,000	정능동 670-4 서재근의 1	
1485	"	" -144		35	"	686-21	36.9	1.9	627,000	자양 308-144 조항구	
1494	"	41- 9		0.6	"	686-53	0.7	0.1	22,000	성수 2 가 236-13 이후자	
1495	"	산10-93		100	"	687	100.6	0.6	210,000	중화동 243-2 이금예	
1501	"	산10-91		101	"	687- 8	101.6	0.6	198,000	수유 486-609 김영석	
1578	"	의2 51- 1		502.6	"	696- 7	503.7	1.1	242,000	영제합명회사	
1589	구 의	산64- 6		25.5	구 의	587-20	25.7	0.2	40,000	황장동 320 이종우	
1595	"	산75- 1		8.7	"	587-39	24.2	15.5	2,790,000	구의산 75 신두문	
1610	"	의1 302- 2		69.6	"	589- 6	90.5	20.9	7,315,000	자양 282 강용학의 1	
1616	"	322- 4		100	"	591- 3	101.1	1.1	407,000	구의 239-81 이영갑	
1625	"	323-13		0.6	"	591-26	0.7	0.1	20,000	구의 210-14 손동수	
1628	"	산2- 2		16.7	"	592- 2	25.3	8.6	2,752,000	구의 326 홍순옥	
1676	"	의1 311- 3		172.5	"	598- 1	189.5	17.3	5,536,000	응암 85-28 박일명의 2	

36-26

제 823 호

지

권

1981.2.7

수납 번호	종건토지			권리 면적	환지토지			증 명	청산금 채납액	남부자	
	종명	지번	영수		명	지번	영수			주소, 설명	
1131	자양	153-17		64	자양	656-13	64.2	0.2	60,000	자양 153-13	박태우
36	"	47-21		53.7	"	585-14	64.5	0.8	240,000	자양 65	박순여
53	"	445-1		3.9	"	585-23	29.9	2.6	7,020,000	자양 271-13	윤재우
55	"	437-16		49.2	"	588-1	60.8	1.6	336,000	모진동 60	지춘복
58	"	407-5		53.7	"	588-5	55.0	1.6	448,000	자양 477-7	이규순
68	"	437-25		60.2	"	588-5	63.5	1.3	286,000	구의동 232-48	윤진용
69	"	407-25		0.6	"	588-28	0.7	0.1	14,000		미용기
71	"	439-1		70.4	"	589-4	73.4	3.0	600,000	성수 1가 670-146	안세환
76	"	387-2		68	"	591-10	60.3	0.3	63,000	자양농 399-2	신현황
107	"	371-128		37.5	"	595-16	38	0.5	145,000	취경농 139-41	이광호
118	"	367-1		40.6	"	597-4	42.7	2.1	798,000	자양농산 14-7	김희원
141	"	386-4		61.7	"	598-31	62.6	0.9	261,000	상봉동 265-1	배종수
172	"	308-3		46	"	601-7	48.7	0.7	210,000	사당동산 24	이문항
191	"	122-7		39.7	"	604-7	40.3	0.6	186,000	자양 122-7	신택수
200	"	104-12		51.8	"	605-1	52.4	0.6	240,000	신당동 199-9	한정기남
204	"	104-37		53.7	"	605-6	54.6	0.9	315,000	자양 395-2	황동주
232	"	317-2		40.3	"	607-10	41.9	1.6	832,000	자양 335-2	최재용
438	"	산15-38		32	"	615-7	32.2	0.2	40,000	노량진 294-424	손찬용
503	"	산13-14		35.7	"	618-27	37	1.3	474,500	석관 371-135	채기범
619	"	193-22		43.6	"	624-33	45.3	1.7	935,000	구의 248-135	김수복
750	"	167-6		50	"	625-16	50.3	0.3	108,000	자양 661-10	임성삼

제 823 호

시

보

1981.2.7

36-27

수납 번호	종 거 토 지			권리 면적	환 지 토 지			승 영	청신금 채납액	납 부 자 주소, 성명
	동명	번	영수		승 영	지 번	영수			
1106	자양동	125-26		47	자양동	654-15	49	2.0	580,000	구의동 55-11 이재달
1233	"	130-5		178.2	"	663-20	187.3	9.1	2,912,000	서교동 379-10 이철희
1236	"	132-2외2		62	"	664-4	62.9	0.9	261,000	자양동 125-9 김대수
1248	"	80-12		42.6	"	665-12	46.7	4.1	1,230,000	자양동 101-2 이갑신
1250	"	80-1		45.7	"	665-15	69.7	24	6,400,000	충신동 13-6 정경덕
1259	"	82-1		35.5	"	665-9	36.1	0.6	174,000	자양동 82-1 장영숙
1274	"	87-6		52	"	667-7	52.2	0.2	56,000	자양동 87-6 김양애
1286	"	산37-1		101	"	671-7	101.8	0.8	176,000	성남북성동 575 구자영
1289	"	산26-3		53.8	"	672-1	54.7	0.9	189,000	구산동 23-20 연원영
1308	"	141-5		38.1	"	679-16	41.1	3.0	1,500,000	구의동 222-41 김재철
1372	"	138-1		40.3	"	681-28	48.4	8.1	2,106,000	잠실동 150 손덕용
1379	"	29-18		26.8	"	681-40	34.6	7.8	1,872,000	장위동 168-303 이병도
1390	"	27-5		50.9	"	682-12	52.5	1.6	560,000	자양동 신봉후
1420	"	산10-34		40.6	"	683-21	41.2	0.6	210,000	화학동 429 서정철
1428	"	22-40		41.1	"	684-4	46.2	5.1	1,734,000	자양동 22-40 최동운
1444	"	27-10		65.4	"	685-3	66.5	1.1	330,000	구미동 243-5 박봉서
1518	"	40-26		27.6	"	690-24	30.2	2.6	728,000	충무로 2가 50-10 양병노
1543	"	66-9		33	"	690-67	33.3	0.3	93,000	자양동 66-9 심정숙
1590	구의동	산72-2외1		41.2	구의동	587-27	61.1	19.9	3,383,000	구미동 210-59 이동순

36-28

제 823 호

지

보

1981.2.7

1618	구의동	322-1	100	구의동	591-5	103.1	3.1	1,116,000	구이동 322-1 박남선
858	자양동	398-1	41	자양동	640-1	41.9	0.9	288,000	취경동 167-52 황의종
871	"	103-209의1	41.4	"	640-26	42.5	1.1	352,000	용담동 10-2 조봉선
895	"	산58-4	105.5	"	645-1	105.6	0.1	28,000	중안동 70-4 이귀호
899	"	산58-10	87	"	645-5	90.9	3.9	975,000	자양동산 15-43 엄익순
909	"	산15-46	52	"	646-10	53.2	1.2	408,000	대근동 1-1 최상호
970	"	107-18	36	"	649-17	36.3	0.3	99,000	중곡동 94-33 윤용학
983	"	산49-20	39	"	650-10	39.8	0.8	232,000	장충동 1가 49-131 김대순
998	"	산48-5	48	"	650-29	48.4	0.4	144,000	이문동 73-18 김재충
1001	"	산48-2	48	"	650-33	48.1	0.1	36,000	충암동 2-46 김심현
1015	"	100-0	31	"	651-11	31.7	0.7	217,000	자양동 106 최명환
1020	"	111-0	45	"	651-20	47.6	2.6	1,040,000	번동 410-4 임원규
1036	"	산49-1	39.6	"	651-40	41.6	2.0	600,000	충암동 4:9-107 김흥기
1090	"	126-1	44	"	653-68	44.7	0.7	252,000	수유동 1-44 김정복
777	"	116-5	36.5	"	635-17	37.6	1.1	363,000	행당 16-4 한영호
822	"	122-45	36	"	638-13	36.3	0.3	93,000	자양 331-12 이순덕
844	"	368-9	46	"	639-12	46.3	0.3	99,000	담우 405-8 지영일
856	"	103-29의1	46.6	"	639-35	48.2	1.6	464,000	연남 223-89 김기영
1664	구의동	산60-7	106.3	구의동	593-9	109.4	3.1	1,116,000	수유 524-35 박일영
1672	"	304-5	76.7	"	594	77.4	0.7	294,000	신당 286-68 지용규

제 823 호

지

보

1981.2.7

36-25

◎서울특별시공고제 35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공람광고

1. 건설부고시제 214호(78.8.2) 및 서울특별시 고시제 290호(79.6.29)로 시설결정고시 및 변경결정고시된 합정동 로타리~제2한강교간 도로확장사업 구간내에 지속 편입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제 25조의 2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시킵니다.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가. 공고장소: 마포구청
나. 공고기간: 1981.2.12-1981.2.25(14일간)

1981.2. 서울특별시장

합정동로타리~제2한강교북측간도로확장공사 합정동(로기)

번	지번	지목	지적	등급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380-9	대	114.11	78	합정동 380-11	정갑배	
2	380-15	"	130.9	80	동송동 25-1	이교용	
3	381-14	"	67.8	80	상왕십리동 710-14	이상보	
4	381-13	"	46.9	80	합정동 274	정수남	
5	380-7	"	204.3	78	" 380-6	김법진	
6	381-12	"	22.5	80	" 274	정수남	
7	381-10	"	175.2	80	" 381-7	임선순	
8	381-9	"	126	80	"	"	
9	381-2	"	628	82	"	"	
10	380-55	"	98.4	78	" 380-11	정갑배	
11	380-56	"	712.3	78	" 380-39	최현탁	
12	381-76	"	321.7	78	" 381-17	김덕준	
13	381-77	"	262.1	80	화곡동 353-1다호	전용재	
14	381-78	"	114.3	78	합정동 381-21	김봉필	
15	381-79	"	114.2	78	"	"	

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등급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16	381-00	대	57.2	77	합정동 381-11	조종덕	
17	381-81	"	167.9	75	"	"	
18	374-2	"	232.2	82	합정동 376-10	이래룡	
19	373-39	"	282.8	82	합정동 373-19	김승현	
20	373-38	"	103.5	82	수유동 230-3	박경희	
21	373-37	"	50.3	82	수유동 240-3 합정동 373-20	박전준과 김남진	
22	373-35	"	30.7	82	이태원동 271	전희화	
23	373-36	"	12.3	76	합정동 373-20	전희화	
24	381-67	"	80.1	80	서울시		

합정도타리~제2한강교간 도로확장공사

합정동 (건물)

번호	지 번	구 조	지속정수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1	380-11	철근조평육계 연와조평육계	1층 29.8	합정동 380-11	정갑래	
			2층 29.8			
			3층 29.8			
			지하 29.8			
2	380-1	철근조평육계	1층 78	합정동 380-39	최창락	
			지하 2			
3	380-17	철근조평육계 연와조평육계	1층 69.88	합정동 381-17	김덕순	
			2층 69.88			
			3층 69.88			
			지하 69.88			
4	381-21	연와조평육계	지하 3.4	합정동 381-21	김봉필	
			1층 32.87			
			2층 20.25			

구호	지번	구조	지축면적	소유 유 자		비고
				주소	성명	
5	381-11 61	연와조 (물리)	6.2	합정동 381-21	김봉필	
		세멘부외조	3.77	"	"	
		스레트층(창고)		합정동 381-11	조종덕	
		연와조평옥개	1층 42			
6	381-2	목조초층	0	합정동 381-2	임선순	
		연와조평옥개	1층 29.31	"	"	
			2층 22-15			
			3층 5.21			
7	374-1	철근콘크리트		합정동 375-1	합평시장	
		옥개	1층 70.2	"	주식회사	
			2층 70.2		"	
			3층 70.2		"	
8	373-16 -25 -26 -27	"		수유동 248-8	박경희	
			1층 17	합정동 373-20	전춘화	
			2층 17			
			3층 17			
9	373-17	"		합정동 373-17	김충현	
			지하 5			
		옥탑	2.67			
			1층 89.91			
10	373-16 -25 -26 -27	"		이태원동 271	김남신	
			2층 89.91			
			3층 89.91			
			4층 13.5			
		"				
			옥탑	0.86		
			1층 17			
			2층 17			
		"				
			3층 17			
			지하 5			
			옥탑	2.67		

번호	지 번	구 조	지속평수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11	373-17	세멘부락조스베트	23.61	합정동 401-20	조종화	
			20			
12	381-2	목 조 와 즈	12	합정동 381-2	임선순	
13	373-20	철근콘크리트 평	1층 31.3	수유동 283-3	박경희	
			2층 31.3			
			3층 31.3			
			4층 10.54			
			지하 4.29			

○ 동대문공고제 35 호

지 적 공 부 복 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상봉동 346-7 노지에 대한 지적공부(토지대장)을 복구하고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다 음

동명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등기부	비고
				주 소	성 명		
상 봉	346-7	도로	139 평		미 등 기	미 등 기	

1. 공시기간 : 81.2.4--81.2.18. (15일간)
2. 공시문 열람장소 : 동대문구청 재무과 관내 각동사무소
3. 지적공부 열람장소 : 동대문구청 재무과
4. 주의사항
가. 지적공부 복구내용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이의 신청 바랍니다.
나. 공시기간중 이의가 없을 때는 공시기간 경과후에는 공시내용과 같이 확정됨
다. 기타 상세한 것은 동대문구청 재무과에 문의 바랍니다.

동 대 문 구 청 장

◎ 영등포구공고제 49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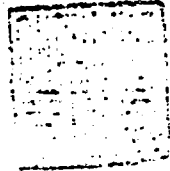
1. 1981.1.31.16:00 영등포구 대림 제3동장 직인을 분실하였기
 서 특별시 공인조례 제6조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포함.
 가. 분실 직인은 1981.1.31.16:00 이후 직인 날인은 무효
 나. 신조 직인은 1981.2.2.09:00 부터 사용 개시

1981. 2. 2.

서울특별시장

공 인 의 인 영

인



영

공인명

대림 제3동장 직인

사 령

1981.2.4

북부위생처리장 이 용 구
지방화공기원

부직을 명함.
2호봉을 급함.
북부위생처리장 근무를 명함.

강동구보전소 박 점 의
지방행정주사

중기관리사업소

서울특별시장

◎ 1981. 2. 7

동대문구4기동 전 제 승
지방행정서기보

대구시 진출을 명함.

서울특별시장

<p>◎ 1981.2.15</p> <p>대구사동구 김태수 지방행정주사보</p> <p>서울특별시 진입을 명함. 판악구 근무를 명함.</p> <p>서울특별시장</p>	<p>◎ 1981.2.5</p> <p>종로구농인1동 김봉균 지방행정서기보</p> <p>내무부 진출을 명함.</p> <p>서울특별시장</p>
--	---

(별지 제2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적사항	성명	서정재	소속	보사국 청소년과
			직명	지방행정 수사보
출석이유	본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편지동 101번지		
	주소	은평구 증산동 171-1		
출석장소	인사위원회 진술			
출석일시	81년 2월 19일 15시 00분			
유의사항	<p>소회의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p>81년 2월 6일</p> <p>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p>				

정 정

시보 제 819 호 6.81.1.13 자) 훈령 위임전결 규정중 오가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한다.

1981. 2

서울특별시장

위 임 전 결 규 정

페이지	줄	오	정
20	위에서 6 째	15. 마약법제17조.....	15. 마약법 제 7 조.....
25	밑에서 3 째	37. 생산원보채출	37. 생산원보채출
32	위에서 4 째	2.3,000 ㎡미만..	2.3,000 ㎡이상...
	위에서 6 째	3.3,000 ㎡미만..	3.3,000 ㎡이상...
	밑에서 11 째	이상채의	이상입지심의 제외
34	맨 끝	29. 수험면허증교부	29. 수험면허장 교부
39	밑에서 4 째	26. 구지점용 허가	26. 구거점용허가
46	위서애 7 째	다. 1전당 5,000 만원이상	다. 1전당 5,000 만원 미만
56	맨 위	마. 정미한 사항의 변경 전결권자 누락	전결권자 국장
57	밑에서 7 째	가. 학교부지 및 아파트 전용지구 전결권자누락	전결권자 국장
	맨 밑	라.1,650 ㎡이상	라.1,650 ㎡ 미만
59	밑에서 4 째	나. 운수과	나. 운수 1 과
65	위에서 11 째	가. 허가및 행정처분	가. 행정처분